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심사기준 개정]

◇ 개정이유

온라인상 실시가 가능한 컴퓨터소프트웨어를 특허로 보호할 필요가 발생하고, 온라인 실시유형이 확대됨에도 “기록매체”만을 특허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한계로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항”을 특허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었음. “프로그램”을 특허로 인정하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과의 심사기준 조화를 이루어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심사기준 명칭 변경

종래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에서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으로 명칭 변경.

**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은 컴퓨터와 그 주변 하드에어에 대하여 특정의 기능이 작동되어 기술적 결과를 발생시키도록 제어, 저장, 입력, 출력, 상호작용 등을 처리하는 “프로그램”과 그 “프로그램 사용 등에 관한 절차”에 대한 발명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로 본 심사기준에서 사용됨.

나.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 기재형식의 인정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이 발명의 범주가 불명확한 기재에 해당한다는 거절이유를 삭제.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성립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은 물건발명으로서 실시 가능하게 해석.

>> 개정 심사기준에 의하면, 컴퓨터 소프트웨어 발명은 장치, 방법, 기록매체, 컴퓨터프로그램 형식으로 청구할 수 있음.

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청구항 기재형식의 인정

- 1)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상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것
 - 2) 인간의 정신활동(판단행위)이 필수구성요소로 포함되지 않을 것
- >> 위반 시 법제29조 제1항 본문(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적용됨.

라. 인정되는 기재형식과 인정되지 않는 기재형식의 예

- 1) 인정되는 기재형식: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 운영체계, 미들웨어, 플랫폼, 컴파일러, 데이터 구조 등
- 2) 인정되지 않는 기재형식: 프로그램 전송매체, 프로그램 신호, 데이터 신호, 소프트웨어 등은 물건의 발명인지 방법의 발명인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불인정. 프로그램 제품, 프로그램 프로덕트 등은 기술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불인정(예외적으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용어의 기술적 범위를 명확히 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

◇ 시행일

2014년 7월 1일 이후 출원부터 적용.